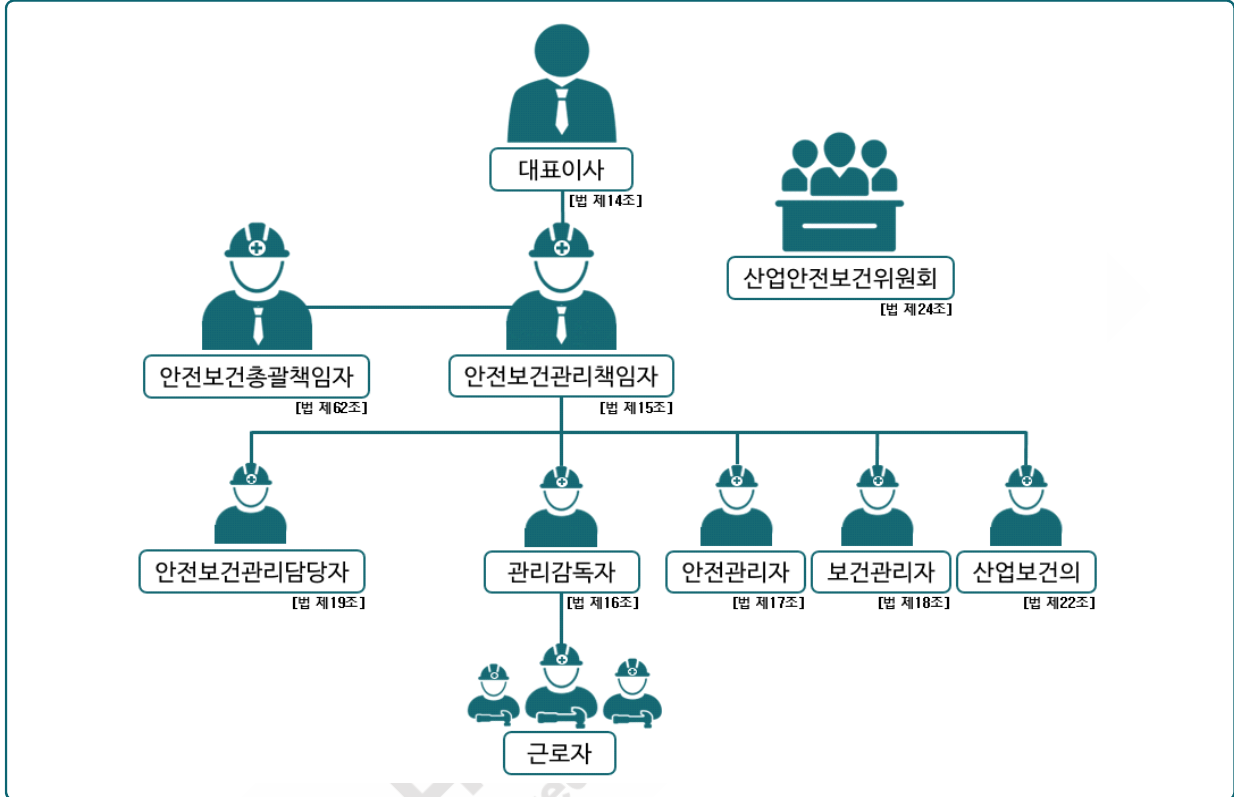


안전 · 보건 관리체계 조직도



사업장의 안전·보건관리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,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하는 조직이 필요하다.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의 종류, 규모,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절한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.

이에 따라, 사업장의 안전·보건 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·보건 관리체계를 이해하고자 한다.

1. 대표이사 (법 제14조)

주식회사 중 대통령령(시행령 제13조)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수립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.

- 대상 :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,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
- 세부내용
 -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
 - ② 안전·보건관리 조직의 구성·인원 및 역할
 - ③ 안전·보건 관련 예산 및 실적 현황
 -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

2. 안전보건관리책임자 (법 제15조)

2.1 자격 및 선임방법

법 조항	자 격	선임방법
제15조	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(법 제15조 제1항)	선임 사실 및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존 [사업장] (시행령 제14조 제3항)



2.2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

건설업 외	건설업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등 ✓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(시행령 별표2) 참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공사금액 20억원 이상

2.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

○ 총괄 · 관리 업무(법 제15조 제1항)

- 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③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-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-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- ⑥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-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
- ⑧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

⑨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 · 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(시행규칙 제9조)

-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
-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

○ 지휘 · 감독 업무(법 제15조 제2항)

-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· 감독한다.

○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의 건의에 대한 조치 의무(법 제20조)

-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이 관리책임자의 총괄 · 관리 업무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 · 조언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3. 관리감독자(법 제16조)

3.1 자격 및 지정방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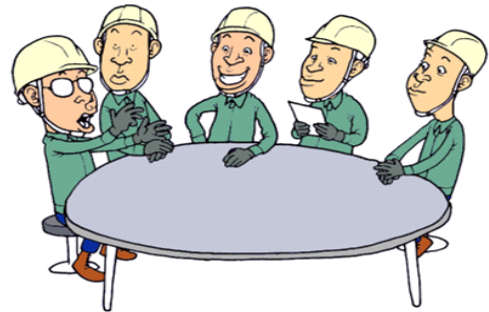
법 조항	자 격	지정방법
제16조	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·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(법 제16조 제1항)	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존 [사업장]

3.2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

○ 대상 :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

○ 제외대상 ※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(시행령 별표1) 참조

-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
 - 가. 공공행정(청소, 시설관리,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)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
 - 나.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 · 중등 · 고등 교육기관, 특수학교 ·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(청소, 시설관리,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)
 - 다. 초등 · 중등 · 고등 교육기관, 특수학교 ·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(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)
 - 라. 국제 및 외국기관
- ②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(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)
- ③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



3.3 관리감독자의 업무

○ 안전 · 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(시행령 제15조 제1항)

- ①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 ·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 ·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·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
- ②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·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· 사용에 관한 교육 · 지도
- ③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
- ④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 ·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· 감독
- ⑤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, 산업보건과의 지도 · 조연에 대한 협조
- ⑥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
 - 유해 · 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
 -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
- ⑦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4. 안전관리자(법 제17조)

4.1 자격 및 선임방법



법 조항	자 격	선임방법
제17조	시행령 별표4에 해당하는 자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	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의 선임 보고서를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(시행령 제16조 제6항)

4.2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

건설업 외	건설업	
	공사금액	안전관리자 수
✓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등 ✓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,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,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(시행령 별표3) 참조	50억원 이상(관계수급인 100억원 이상) 120억원 미만 [토목공사 150억원 미만]	1명 이상
	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[토목공사 150억원 이상]	
※ 시행시기 - 100억 이상(20. 7. 1), 80억 이상(21. 7. 1), 60억 이상(22. 7. 1), 50억 이상(23. 7. 1)		

※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공사금액이 120억원[토목공사 150억원] 이상인 건설업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(시행령 제18조 제1항)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.(시행령 제16조 제2항)

4.3 안전관리자의 공동선임

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,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가 300명 이내인 경우에는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.(시행령 제16조 제4항)

- ① 같은 시 · 군 · 구(자치구를 말함)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
- ②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km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

4.4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

○ 시행령 제52조(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)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.(시행령 제16조 제3항)

※ 단,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,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,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(시행령 별표3)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

○ 적용대상 도급사업 ※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(시행령 제52조)과 동일

건설업 외		건설업
50명 이상	100명 이상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선박 및 보트 건조업 ✓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50명 이상 대상업종 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※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 포함

○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,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.(시행령 제16조 제5항, 시행규칙 제10조)

- ①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
-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(건설공사의 경우 건설 공사금액)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

4.5 안전관리자의 업무(시행령 제18조)

-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 체에서 심의·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
-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④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⑤ 사업장 순회점검, 지도 및 조치 건의
- ⑥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·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·관리·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⑧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⑨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·유지
- ⑩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4.6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(시행령 제19조 제1항)

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(안전관리전문기관)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※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(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)」의 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불가능 <시행일 '21. 10. 21>

4.7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·조언(법 제20조)

사업주,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·관리 업무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지도·조언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5. 보건관리자(법 제18조)

5.1 자격 및 선임방법



법 조항	자 격	선임방법
제18조	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자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	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의 선임 보고서를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(시행령 제20조 제3항)

5.2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

건설업 외	건설업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등 ✓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,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,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(시행령 별표5) 참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(토목공사 1,000억원 이상)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

5.3 보건관리자의 업무 (시행령 제22조)

-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·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
- 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③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④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⑤ 산업보건의의 직무(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로 한정)
- ⑥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⑦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(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로 한정)
 - 가.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
 - 나.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
 - 다. 부상·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
 - 라.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
 -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
- ⑧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⑨ 사업장 순회점검, 지도 및 조치 건의
- ⑩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·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⑪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·관리·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⑫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⑬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·유지
- ⑭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

6. 안전보건관리담당자 (법 제19조)

6.1 자격 및 선임방법



법 조항	자 격	선임방법
제19조	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 (시행령 제24조 제2항) 1.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2.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3.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	선임 사실 및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존[사업장] (시행령 제24조 제4항)

6.2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(시행령 제24조)

사업의 종류	규 모
1. 제조업 2. 임업 3. 하수,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. 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. 환경 정화 및 복원업	✓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

6.3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(시행령 제25조)

- ①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③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④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⑤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,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⑥ 산업 안전·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
7. 산업보건의 (법 제22조)

7.1 자격 및 선임방법



법 조항	자 격	선임방법
제22조	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,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(시행령 제30조)	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의 선임 보고서를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(시행령 제29조 제3항)

7.2 산업보건역의 직무 (시행령 제31조)

- ①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,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
- ②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
- ③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8. 산업안전보건위원회 (법 제24조)



법 조항	대상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	
	건설업 외	건설업
제24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등 ✓ 시행령 별표9 참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(토목공사 150억원 이상)

8.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사항 (법 제24조 제2항)

- ① 법 제15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
- ② 법 제15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
- ③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을 도입한 경우 안전 ·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
- ④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·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8.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(시행령 제35조, 제36조)

■ 사용자위원

- ✓ 해당 사업의 대표자(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)
- ✓ 안전관리자 1명(위탁 시 전문가관 담당자)
- ✓ 보건관리자 1명(위탁 시 전문가관 담당자)
- ✓ 산업보건의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)
- ✓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

■ 위원장

- ✓ 위원 중 호선(互選)
- ✓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가능



■ 근로자위원

- ✓ 근로자대표
- ✓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
- ✓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(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 수)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

8.3 회의 일시 및 회의록 작성 (시행령 제37조, 제39조)

-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 개최 일시 및 장소, 출석위원, 심의 내용 및 의결 · 결정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·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(社內報),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,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.

9. 안전보건총괄책임자 (법 제62조)

9.1 자격 및 선임방법



법 조항	자 격	선임방법
제62조	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(법 제62조 제1항)	선임 사실 및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존(사업장) (시행령 제53조 제3항)

9.2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(시행령 제53조)

-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
- ② 작업의 중지
- ③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
-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· 조정 및 집행의 감독
- ⑤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

안전보건교육일지

결 재				

교육일시	년 월 일 : ~ : (시간)				
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(산안법 시행 규칙 제26조 제1항 관련)	교육과정	교육대상			교육시간
	□ 정기교육	사무직 종사 근로자			매분기 3시간 이상
		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	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		매분기 3시간 이상
			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		매분기 6시간 이상
	□ 채용 시 교육	일용근로자			1시간 이상
		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			8시간 이상
	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	일용근로자			1시간 이상
		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			2시간 이상
	□ 특별교육	별표5 제1호 라목 각 호(제40호는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			2시간 이상
		별표5 제1호 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			8시간 이상
별표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			- 16시간 이상 (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) -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		
교육인원	구 분	계	남	여	비 고
	대 상 인 원				【교육 참석자 명단】 참조
	참 석 인 원				
교육제목	안전 · 보건 관리체계				
교육내용	1. 대표이사 2.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. 관리감독자 4. 안전관리자 5. 보건관리자		6. 안전보건관리담당자 7. 산업보건의 8. 산업안전보건위원회 9. 안전보건총괄책임자		
교육장소 및 실시자	교육장소	직 명		성 명	

〈 교육 참석자 명단 〉

연 번	소 속	성 명	서 명	연 번	소 속	성 명	서 명
1				21			
2				22			
3				23			
4				24			
5				25			
6				26			
7				27			
8				28			
9				29			
10				30			
11				31			
12				32			
13				33			
14				34			
15				35			
16				36			
17				37			
18				38			
19				39			
20				40			